

**2025년 민간단체 보조금 집행실태
특정감사 결과 공개문**

2026. 1.

I

감사 개요

□ 감사목적

-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 보조금(기금, 출연금 등 포함) 집행실태, 국가 위탁사무 이행실태 확인.점검을 통해 보조금 집행 및 국가사무 이행의 적정성·투명성 제고

□ 감사근거

- 「공공감사에 관한 법률」 제19조 및 제21조

□ 감가기간 및 인원

- 감사기간 : 2025. 5. 12.(월) ~ 5. 20.(화)
- 감사인원 : 감사담당관 외 5명

□ 감사대상

- △△생산자협의회
- △△산업협회
- △△협동조합
- △△인증원
- △△협회
- △△생산협회

□ 감사내용

- 최근 3년간('22~'25.4.) 보조금(기금, 출연금 등 포함) 집행실태 전반
 - 목적 외 사용여부, 계약규정 준수 여부, 정산 및 사후관리 적정성 등

II

감사 결과

1	수의계약 추진 미흡		
처분요구	통보	관계기관	□□□□□

- 「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」 제7조에 따라 용역계약을 체결할 경우 일반경쟁에 부쳐야 하고, 제한적 조건에 따라 수의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나,
- 복숭아 과원관리 달력을 제작·보급하면서 사업 예산 기준으로 수의계약 조건에 해당되지 않는데도, 추가 계약 형태로 추정가격 1억 원 이하로 분할하여 수의계약으로 체결함

□□□□□

국고보조금을 교부받아 계약 업무를 추진 할 경우 「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일반경쟁으로 체결하고 사업 분할을 통한 수의계약을 체결하지 않도록 업무담당자 대상 자체 교육 실시 요구 (통보)

2	계약 업무 추진 미흡		
처분요구	통보	관계기관	□□□□□

- 「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」, 「농수산물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할 경우 계약 이행 전에 계약 변경을 하고, 계약금액 조정으로 사업계획을 변경할 경우 농식품 부의 승인을 받아야 하나,
- 고품질 복숭아 재배기술 교육 및 자조금 설명회 지원 용역사업을 추진

하면서 최초 계약(2024.6.5.) 후 추가 사업 착수(9.25.) 이후에 계약을 변경(11.5.)하였고, 계약 변경에 따른 금액 증가로 사업계획을 변경하면서 농식품부 승인을 받지 않음

□□□□□

국고보조금을 교부 받아 계약 업무, 사업계획 변경 등 자조금 사업을 추진할 경우 「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」, 「농수산물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」 등 관련 법령 준수 요구 (통보)

3	선금 지급 부적정		
처분요구	주의	관계기관	△△△△△

○ 「정부 입찰·계약 집행기준」에 따라 계약상대자에게 선금을 지급할 경우 계약금액의 100분의 70을 초과하지 않도록 지급하고 지급 후 증권 또는 보증서를 제출받아야 하나,

- 2022년 연구용역(3건)을 추진하면서 선금 지급 범위를 초과(계약금액의 100%)하여 지급하였고, 선금 지급 후 증권 또는 보증서를 제출받지 않음

△△△△△

국고보조금을 교부 받아 계약업무를 추진하면서 「(계약예규) 정부 입찰·계약 집행기준」에서 정하고 있는 지급 기준을 초과하여 선금을 지급하였고 선금 지급 후 증권 또는 보증서를 받지 않는 등 계약업무를 소홀하게 추진한 관련자에 대해 “주의” 조치 요구 (주의)

4	수의계약 추진 미흡		
처분요구	통보	관계기관	△△△△△

- 「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26조에 따라 추정가격 2천만 원 이하의 물품의 제조·구매 또는 용역계약의 경우 수의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나,
- 2022년 용역 사업(2건)을 추진하면서 추정가격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데도 수의계약으로 체결함

△△△△△

국고보조금을 교부 받아 계약업무를 추진 할 경우 「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」에서 정하고 있는 수의계약 조건에 부합되게 계약을 체결하도록 업무담당자를 대상으로 자체 교육 실시 요구 (통보)

5	농기계 생산 및 사후관리 지원사업 추진 미흡		
처분요구	통보	관계기관	○○○○○

- 「농기계 생산 및 사후관리지원사업 지침」에 따라 사업 신청단계에서 사업 내용 등을 인터넷을 통해 홍보하고, 대상자 선정 기준, 방법 등 세부적 사항은 농식품부 승인을 받아야 하나,
- 2025년 사업대상자를 선정하여 농식품부에 승인 요청하는 등 농기계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도 사업 내용 등을 인터넷을 통해 홍보하지 않았고, 대상자 선정 기준 및 방법이 변경되었는데도 농식품부의 승인을 받지 않은 상태로 대상자를 선정하였음

○○○○○

농기계 생산 및 사후관리지원 사업을 수행하면서 사업 홍보 및 사업자 선정 안내를 철저히 하시고, 사업자 선정 기준 및 방법 등에 대해 농식품부의 승인을 받는 등 관련 사업지침 준수 요구 (통보)

6	버섯 종자의 수입적응성시험 실시요령 운영 미흡		
처분요구	개선	관계기관	◇◇◇◇◇◇

○ 「버섯종자의 수입적응성시험 세부실시요령」은 상위법령 및 고시 등에 따라 제정·운영되어야 하나,

- 인증원의 현재 세부실시요령은 2010년 이후 개정되지 않아 상위법령 및 종자관리요강과 일부 조항과 내용이 상이함

◇◇◇◇◇◇

「버섯종자의 수입적응성시험 세부실시요령」을 상위규정에 맞게 개정하여 관련업무 추진에 활용 요구 (개선)